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3,136,855	21,694,106
일반회계	613,459,660	18,403,790
특별회계	109,677,195	3,290,316
공기업특별회계	95,764,222	2,872,9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403,128	762,09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388,925	1,211,66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9,972,169	899,165
기타특별회계	13,912,973	417,389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04,784	42,144
강릉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346,000	40,380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68,743	98,062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396,400	11,892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3,133,210	93,996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1,839,042	55,171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5,000	750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499,794	74,994

제 2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2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963,50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3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